

**LOTTE**  
**SHOPPING**

# 보상위원회 규정



# 보상위원회 규정 [제정 : 2019. 11. 30, 최종개정 : 2023. 03. 29]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쇼핑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구성

---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2인 이상 포함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조 제3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회의

---

제6조(개최) 위원회는 年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 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등기 이사의 개별 보수 (성과급 포함)
3. 비등기 임원의 직급별 보수 한도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통지 및 보고) 위원회는 심의 또는 결의한 내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안건의 정리 및 배포, 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개폐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 이 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